##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안상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699

발의연월일: 2024. 9. 4.

발 의 자: 안상훈·김성원·신동욱

이성권 • 박충권 • 고동진

서일준 • 박성민 • 백종헌

박성훈 · 강대식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, 기상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 구청장이 재난에 관한 예보·경보·통지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, 방송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또는 인터넷 홈 페이지 게시, 방송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농아인의 경우 수어가 제1언어이고 한글은 외국어와 같으므로, 재난 상황 및 대처요령 정보가 긴급재난 문자로 발송되더라도 그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해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.

이에 행정안전부장관, 기상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 장이 주요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재난에 관한 예보·경보·통지를 요청하는 경우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영상 을 함께 제공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 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38조의2).

법률 제 호

###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의2제7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9항(종전의 제8 항) 중 "제7항에"를 "제8항에"로 하고, 같은 조 제12항(종전의 제11항) 중 "제7항과 제8항을"을 "제8항과 제9항을"로 한다.

⑦ 행정안전부장관, 기상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제2호(제4항 후단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라 재난에 관한 예보·경보·통지를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영상을 함께 제공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있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8조의2(재난 예보・경보체계	제38조의2(재난 예보ㆍ경보체계
구축·운영 등) ① ~ ⑥ (생	구축·운영 등) ① ~ ⑥ (현
략)	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⑦ 행정안전부장관, 기상청장,
	<u>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</u>
	구청장은 제3항제2호(제4항 후
	단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)에
	따라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
	•통지를 요청하는 경우 대통
	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
	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청각장
	애인을 위한 수어영상을 함께
	제공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맞
	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
	<u>청할 수 있다.</u>
<u>⑦</u> (생 략)	<u>⑧</u> (현행 제7항과 같음)
<u>⑧</u> 시·도지사는 <u>제7항에</u> 따른	<u> ⑨</u> <u>제8항에</u>
시・군・구종합계획을 기초로	
시・도 재난 예보・경보체계	
구축 종합계획(이하 이 조에서	
"시·도종합계획"이라 한다)을	
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	
제출하여야 하며, 행정안전부장	

관은	필요한	경우	시 •	도지사
에게	시・도충	종합계	획의	보완을
요청학	할 수 있	다.		

<u>⑨·⑩</u> (생 략)

① 시·도지사와 시장·군수· 구청장이 각각 시·도종합계획 과 시·군·구종합계획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는 <u>제7항과 제8</u> 항을 준용한다.

① (생략)

<u>⑩</u> · <u>⑪</u> (현행 제9항 및 제10항
과 같음)
<u> </u>
<u>제8항과 제9항을</u>
③ (현행 제12항과 같음)